#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우즈베키스탄 공화국(Republic of Uzbekistan)
2. 수도 : 타슈켄트(Tashkent, 246.4만명)
3. 인구・면적 : 2,394만명(2021년), 448,924㎢(한반도의 약 2배)
4. 공용어 : 우즈벡어(공식어), 러시아어(통용어, 14% 정도의 인구가 러시아어 사용)
5. 1인당 GDP : 1,832달러(2019년)
6. 독립일 : 1991. 9. 1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양원제

## 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❍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

## 2. 연혁

❍ 1991. 9. 1.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
❍ 1992. 12. 8. 헌법 제정 –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
❍ 1995. 8. 30. 헌법재판소법 제정
❍ 1995. 12. 22. 헌법재판소 설립
❍ 2021. 2. 9. 헌법 개정
❍ 2021. 4. 27. 헌법재판소법 개정

## 3. 구성

❍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(헌법재판소법 제6조)

○ 재판관은 카라칼팍스탄(Karakalpakstan) 자치공화국 대통령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가 추천한 정치학 및 법학 부문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이 선출(헌법 제108조)

○ 재판관의 임기는 첫 선출시 5년, 두 번째 선출 시 10년이고, 2회를 초과하여 중임 불가(헌법재판소법 제7조)

○ 재판관 자격 : 정치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, 재판관이 되기에 적합한 뛰어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35세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(헌법재판소법 제10조)

## 4. 권한(헌법 제109조)

○ 법률과 의회규칙, 대통령령, 행정 각부의 부령, 지방정부의 조례 및 국제조약 등의 위헌 여부 심판

○ 헌법적 법률 및 대통령 서명 이전의 국제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

○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헌법의 우즈베키스탄 헌법에의 합치 여부 및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법령의 우즈베키스탄 법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

○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

○ 특정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 심리

○ 헌법소송을 일반화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 양원과 대통령에게 국가의 합헌성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출

○ 그 밖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

## 5. 심리 및 결정

○ 심판청구권자: 상·하원, 대통령, 장관, 인권에 관한 의회 대표(옴부즈맨) 및 부대표(옴부즈맨, 아동권리위원),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의회, 상원의원 1/4 이상, 하원의원 1/4 이상, 대법원, 검찰총장, 감사원, 국가인권센터, 대통령 직속 기업가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대표(헌법재판소법 제27조)

○ 법률이 시민과 법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였고, 그러한 법률이 특정 사건에 적용되었으며,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, 그 시민과 법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27조)

○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며(헌법재판소법 제32조),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(헌법재판소법 제77조)

○ 대통령, 상원의장, 하원의장, 총리, 인권에 관한 의회 대표(옴부즈맨) 및 부대표(옴부즈맨, 아동권리위원), 국가인권센터장,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의회의장,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, 대법원장, 검찰총장, 법무부장관, 감사원장, 대통령 직속 기업가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대표는 헌법소송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40조)

○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인, 전문가, 감정인, 통역사 등을 소환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42조)

○ 결정은 사건 참여 재판관의 다수결로 결정되고, 만약 동수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짐(헌법재판소법 제69조)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표와 더불어 효력을 발생하며, 최종적이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(헌법 제109조)

○ 결정을 내린 후 결정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거나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헌법 규범이 변경된 경우이거나 헌법재판소가 확립된 헌법재판절차를 위반하여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,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재심 여부를 결정(헌법재판소법 제74조)

## 6. 기타사항

○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(헌법 제83조)

## 7. 연락처

○ 주　　소 : Tashkent city, 100163, Islam Karimov street, 43
Uzbekistan

○ 전화번호 : +99871 238-29-21

❍ 홈페이지 : http://www.konstsud.uz

※ 출처 :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우즈베키스탄 헌법
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법

(2021. 7 작성)